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(2022. 7. 13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
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직제규정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
2022년 7월 18일

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107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2-계급별정원] 에서 ‘1급’ 을 ‘사무처장급’ , ‘2급’ 을 ‘1급’ 으로 하고 직명을 ‘부장’ 으로, ‘3급’ 을 ‘2급’ 으로 하고 직명을 ‘팀장’ 으로, ‘4급’ 을 ‘3급’ 으로 하고 직명을 ‘팀장’ 으로, ‘5급’ 과 ‘6급’ 을 각각 ‘4급’ 과 ‘5급’ 으로 하고, 직명을 ‘팀원’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2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(2022. 7. 13)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
2022년 7월 18일

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규정 제 108 호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개정규정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중 ‘1급, 2급, 3급, 4급, 5급, 6급’ 을 ‘사무처장급, 1급, 2급, 3급, 4급, 5급’
으로 한다.

제17조 제1항 중 ‘4급’ 을 ‘2급’ 으로 한다.

제26조 제1항의 표에서 급별 ‘1급’ 을 ‘사무처장급’ 으로, ‘2급’ 을 ‘1급’, ‘3급’ 을
‘2급’, ‘4급’ 을 ‘3급’, ‘5,6급’ 을 ‘4,5급’ 으로 한다.

제28조 제1항의 1호 ‘2급’ 을 ‘1급’ 으로, ‘3급, 4급’ 을 ‘2급, 3급’ 으로, ‘5,6급’ 을
‘4급, 5급’ 으로 한다.

제61조 제1항의 1호 ‘1급’ 을 ‘사무처장급’ 으로, ‘2급 이하’ 를 ‘1급 이하’ 로 한다.

별표1의 급별 ‘1급’ 을 ‘사무처장급’ 으로, ‘2급’ 을 ‘1급’, ‘3급’ 을 ‘2급’, ‘4
급’ 을 ‘3급’, ‘5급’ 을 ‘4급’, ‘6급’ 을 ‘5급’ 으로 한다.

별표3의 직종 중 ‘4급’ 을 ‘3급’, ‘5급’ 을 ‘4급’, ‘6급’ 을 ‘5급’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